국민연금공단 노무사 및 정보보안전문가(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무사 및 정보보안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인원	주요 수행업무
전문계약직	공인 노무사	1명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활동, 사건 처리 및 후속 조치 수행 등 인권침해 예방·관리 및 대응 지원 • 노동·인사 관련 대내분쟁 사건 대응 및 지원 • 노동 관련 정책, 실무 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 • 그 밖의 기관의 노사, 노무, 인사 관련 실무 업무 지원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정보보안 전문가	2명	• 정보시스템 취약점(기술·물리적 보안) 분석 및 대응 •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기대응 모의훈련, 자체 전산망 침투 대응훈련 등 • 사이버침해 분석·대응 및 사고조사 * 악성코드 분석・침해사고 조사 등 대응방안 마련, 사이버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보안관제 시스템 등) • 정보공유시스템(NCTI) 관리 운영 및 기관 협력 • 정보보안 최신기술 동향, 취약점 분석 등 내부 직원 기술교육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 지원자격(접수마감일 '26. 11. 16. 기준)

구분		지 원 자 격
일반요건 (공통)		• 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참고 1**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경력 요건	**공인 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정보보안 전문가	• (**필수**)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① 정보화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정보화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력 인정분야**)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 관제 등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인정 자격증**)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개인정보관리사(CPPG)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6. 11. 16.)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여야 함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6. 11. 16. 기준)

구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全 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류*	全 전형	10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상이등급 확인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등

※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근로조건

구분	공인노무사	정보보안전문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근무형태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복무는 공단 제규정에 따름)	
고용형태	• 전문계약직 (사무직 4급 대우)	• 전문계약직 (전산직 4급 대우)
근무장소	• 본부 인사혁신실 (전북 전주)	• 본부 AI디지털혁신본부 (전북 전주)
보수수준	• 연봉 6,600~8,000만원 수준	• 연봉 7,000~7,600만원 수준
	※ 경력에 따라 보수수준 결정 예정 ※ 중식비・상여금・제수당 포함, 경영평가 성과급・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별도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전형절차	일정
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 우편・이메일・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서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6. 11. 2.(월) ~11. 16.(월), 18:00까지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능력기술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내용 없음, 동일 내용 반복, 특정기호만 표기, 질문과 무관한 내용 등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일 '26. 11. 27.(금) (개별 안내 예정)
증빙자료 제출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서류: '3.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참고 • 제출방법: **온라인으로 스캔본 제출 후 면접전형 시 실물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취소 시 면접전형에서 제외)	'26. 11. 27.(금) ~11. 30.(월)

구분	전형절차	일정
면접전형	• 면접장소: 공단 본부(전북 전주) • 면접방법: 개별면접 ※ 면접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26. 12. 2.(수) ~12. 3.(목)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별 가점을 합산한 **면접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④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	'26. 12. 15.(화) (개별 안내 예정)
임용	• 최종합격자 임용	'27. 1. 4.(월)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자격사항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 필수 > • (정보보안전문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만 >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6. 11. 16.)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여야 함**
학력사항	• (정보보안전문가) 정보화 분야 **학위증명서** 1부 … < 해당자만 > ※ 각 대학별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최신 발급본으로 제출
경력사항	• (공통)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 < 필수 > • (공통) **4대보험**[1] 또는 **직역연금**[2] **가입증명서** 1부 … < 필수 > 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2)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경력자에 한해 추가 제출 필요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재직) 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여야 인정됨
우대사항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류* 각 1부 … < 해당자만 >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상이등급 확인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등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 11. 16.)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 11. 16.)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직무능력기술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연락처 포함)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날짜로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2)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6. 12. 15.~12. 30.)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63-713-5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NPS 국민연금공단

참고 1

공단「인사규정」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참고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